

교원업적평가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본 대학' 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전임교원(이하 '교원'이라 한다)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.

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를 말한다.

③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학교법인 청강학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업적평가의 원칙) 교원의 업적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한다.

제 2 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

제4조(평가대상기간 및 시기) ①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1일에서 당해연도 11월17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한다.

② 평가 시기는 매년 11월로 연1회 평가한다.

제5조(업적평가기구) 교원업적의 평가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'평가위원회'이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평가위원회 구성)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교원업적평가주무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평교수 3인 이상을 포함한 15인 이내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2019.4.8. 개정) (2020.7.1.개정) (2021. 3. .개정)

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

제7조(교원업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) ① 본 대학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은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을 매해년도 11월17일까지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 및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평가절차) ①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을 수합·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상정된 교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, 주무부서는 개별 교원의 업적심사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총장은 평가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주무부서는 업적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

제9조(이의신청 및 처리) ① 교원은 정량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와 재심청구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학교정보화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. 단, 제출서류에 대한 미비 등 심사대상교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은 재심청구가 불가하다.

② 평가위원장은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며, 주무부서는 그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재심을 청구한 교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3 장 평가영역 및 기준

제10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영역평가와 스쿨(전공)/대학전체영역평가, 스쿨(부서)영역평가로 구분한다. (2021.3. 개정)

- ① 개인영역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.(2021. 3. .개정)
- ② 스쿨(전공)/대학전체영역평가는 정량지표로 평가한다. (2021. 3. .개정)
- ③ 스쿨(부서) 영역평가는 정성지표로 평가한다.(2021.3. . 신설)

제11조(평가비율)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 기준의 교수 구분별 평가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.(2019.4.8. 개정)

제12조(개인영역평가) ① 개인영역평가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한다.(2021. 3. .개정)

- ② 정량지표는 교육활동, 연구 등으로 평가한다. (2021. 3. .개정)
- ③ 교수는 자기발전계획서를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 기준 확정 후 주무부서에서 제시한 기준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(2019.4.8. 개정) (2020.5.27. 개정) (2021. 3. .개정)
- ④ (삭제)
- ⑤ 정성지표는 개인 업적결과를 기준으로 원장, 본부소속부서장(처장), 총장이 각각 결과중심으로 평가한다.(2019.4.8.개정) (2020.7.1.개정) (2021.3. .개정)(2023.4. .개정)

제13조(스쿨(전공)/대학전체 영역평가) ① 스쿨(전공)/대학전체 영역평가는 정량지표로 평가한다.(2021. 3. .개정)

- ② 정량지표는 재학생충원율, 산학지수, 입학지수, 만족도 지수 등에 대해 교원업적평가 세부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 (2017.6.1. 개정) (2019.4.8. 개정) (2021. 3. .개정)
- ③ (삭제)
- ④ (삭제)
- ⑤ (삭제)

제13조의2(전공영역평가) 삭제

제13조의 3(스쿨(부서)) 영역평가) ① 스쿨(부서) 영역평가는 정성지표로 평가한다.

- ② 정성지표 평가는 매년 스쿨(부서)에서 발표하는 사업 및 발전계획서와 사업추진실적을 토대로 평가위원회와 총장이 결과중심으로 평가하며, 필요시 중간실적보고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

제14조(가점 평가) 삭제

제14조의2(평가조정) (2019.4.8. 개정) (2021.3. .삭제)

제15조(세부평가기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별 세부평가기준(별첨1)은 별도로 정하며, 기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업적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기 타

제16조(비밀유지) 본 평가에 참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누설을 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
제17조(보칙)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③ 삭제

제18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은 재직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(안)을 마련하여 제규정 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.(2020.7.1. 개정)

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

제19조(평가결과의 활용)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인사 및 보수산정의 기초자료, 우수교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(경과 조치) 2017학년도 산학연구학기제 대상자(1학기 3월 1일부터 2학기 개강전 까지, 2학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는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

이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교원업적평가에 적용한다.